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

(의안번호 제55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2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7. 12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9. 7. 22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위탁사유

- 0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노인요양 시설을 경영의 합리화로 운영비 등 제경비를 절감케하고 전문적 운영으로 경영의 효율성 도모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료효율을 증대키 위하여 위탁운영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0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.
- 0 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마련
- 0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확보 및 시설운영능력, 재정적 부담능력,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능력과 재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.
- 0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함.
- 0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운영비지급 등 위탁조건 명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고성군노인요양시설및운영조례 제7조의 근거에 의거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노인요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0 직영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위탁운영의 필요성, 예산절감 및 인력운용 효과, 시설관리 등 제반운용에 따른 장·단점을 충분히 듣고 심의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군 직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의 차이점은

● 답 : 전문성 결여 및 필요인원 증가로 군직영 시행보다 1억8천9백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9. 7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